

	<h2 style="margin: 0;">연구원 임용 규정</h2>	문서번호	3-2-33		
		제정일	2020. 12. 31.		
		개정일	2022. 04. 22.		
		페이지	1/1	관리 부서	교무처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연구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자격 및 역할)** 연구원은 해당 전공분야 또는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해당 부서 제반 연구활동 수행과 부서 운영에 대한 전담 업무를 수행한다.

**제3조(임용)** 연구원은 공개적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의 방법으로 임용한다.

**제4조(임용서류)** 연구원의 임용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이력서 1부
2. 자기소개서 1부
3. 최종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

**제5조(임용기간)** 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1년씩 2회까지 재임용할 수 있다. 단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그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**제6조(처우)** 연구원에게는 대학에서 일정한 봉급률 지급한다. 단, 봉급액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**제7조(복무)** 주 5일 근무(40시간)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총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예외로 할 수 있다.

**제8조(면직)**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면직할 수 있다.

1.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배하였을 때
2.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
3. 신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
**제9조(기타)**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.

	<h2>연구원 임용 규정</h2>	문서번호	3-2-33		
		제정일	2020. 12. 31.		
		개정일	2022. 04. 22.		
		페이지	2/1	관리 부서	교무처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